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1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구자근 · 인요한 · 김위상
김선교 · 강승규 · 강대식
박준태 · 이만희 · 정동만
최은석 · 안철수 · 박성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외국산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 후 국산으로 소위 ‘택(tag)같이’하여 판매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생태계 및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원산지 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원산지 판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① ----- ----- ----- ----- 다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하여서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원산지 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원산지 판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